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9. 24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9.0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.9.10.
- 다. 상정일자 :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4.9.24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오 선 호 일자리진흥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사회적경제기업 정의(안 제2조)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사회적기업 관련 서울시 조례, 우리 구

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- 안전행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

2)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4조)

-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
- 구 의회사무국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
-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

3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범위 구체화(안 제6조 ~ 제7조)
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·공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

4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(안 제9조)

-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한 사항을 반영한 우선구매 선정기준을 마련

5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사항 규정(안 제10조)
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 불만, 재고 부족, 긴급한 수요 발생 등 우선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명시

6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(안 제13조)

-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, 학교, 종교시설,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
-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.
- 2007년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국정 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고,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양적·질적인 성장을 가져 왔음.
-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, 사회 안전망 취약, 청년실업 증가 및 사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.  
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각종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부서별로 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개척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간 민·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“사회적경제지원센터”의 건립이 필요

한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속 행정기관 범위에 “보건소”는 해당되고, “동”은 하부행정기관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구 본청, 보건소, 동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